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동 개정조례안은 2003. 2. 27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, 2003. 3.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개정이유

-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 학생 수련·교육의 원활한 수행과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분원 및 야외교육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(舊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소재지)로 이전하고,
-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생활중심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“여학생교육분원”의 명칭을 “생활체험의 집”으로 변경하여 그 소재지를 경기도 가평군(현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 소재지)으로 이전하며,
- 일부 본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 소재지를 “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 106번지 1호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 27호”로 변경
-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“여학생교육분원”의 명칭을 “생활체험의 집”으로 변경하고, 그 소재지를 “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45”에서 “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87-1”로 변경
-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일부 분원의 명칭 변경
 - 대성의 집 분원 → 대성의 집
 - 대천임해수련분원 → 대천임해수련원

4. 검토의견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 학생 수련·교육의 원활한 수행과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분원 및 야외교육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(舊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소재지)로 이전하고,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생활중심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“여학생교육원분원”의 명칭을 “생활체험의 집”으로 변경하여 그 소재지를 경기도 가평군(현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 소재지)으로 이전하며, 일부 본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됨.
- 여학생교육원 분원은 1984년부터 현재의 송파구 장지동에 소재하는 한국어린이육영회의 건물일부를 임차하여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생활체험이나 식사예절, 가정생활 등의 내용을 가지고 3박4일과정으로 편성하여 1기당 430명 가량의 교육생을 배출해오고 있음. (전년도 교육실적 총11,498명)
 - ※ 여학생교육원 임차료는 2001년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2002년부터는 유료로 전환하였으며, 연간 임차료는 약2억4천만원임.
- 동 교육원은 원장1인을 포함하여 총 13명 정원(시간강사 등 4명은 별도)에 금년도 예산액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9억3천만원임.
- 동 교육원은 임차계약 만료로 전년도 12월31일까지 이전기로 하였으나, 이전기로 한 종로구 사직동 소재 舊교육연수원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인접한 매동초등학교 운동장부지와 중첩관계로 학부모로부터 이전반대 청원이 제기되어 이전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재의 학생교육원 본원이 있는 가평으로 이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여짐.
-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 교육원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, 양성평등의 교육이념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최근 3년전부터 남학생도 대상으로 혼합반을 편성하여 교육을 해왔고, 이번에 이를 반영하여 여학생교육원의

- 명칭도 “생활체협의 집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러한 조치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지향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육기능의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.
- 이번에 여학생교육원이 가평본원으로 이전케 됨에 따라 현재 가평본원에서 실시중인 지도자 중심의 교육(2박3일 또는 3박4일 과정 176명 수용)과정은 7월31일부로 폐지되고 가평본원도 종로구 사직동에 소재하는 舊교육연수원 자리로 이전케 됨.
 - 통상 교육원 본원은 주된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곳에 소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울시 교육청 소관 학생교육기관은 본원을 포함하여 3개 분원과 4개 야외교육장 모두 경기도 일원에 분산되어 있어, 총괄 및 기획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본원의 위치는 서울시교육청 인근에 소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봄.
 - 다만, 이번 여학생교육원과 본원의 이전은 적절한 공간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은 바, 향후 적절히 분산된 교육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설별 특성화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짐.
 - 그밖의 “분원”의 명칭을 삭제하는 부분이라든지 교육원 소재지의 주소가 변경된 것은 지목변경 등 행정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17조제2항중 “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106번지 1호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 27호”로 한다.
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2]

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·위치(제20조 관련)

구 분	분원 및 야외교육장명	소 재 지	비 고
분 원	생활체협의집	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87-1	
	대성의집	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585	
	대천임해수련원	충청남도 보령시 신후동 2055	
야외교육장	모현야영수련장	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 산25-1	
	퇴촌야영수련장	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-4	
	천마의집	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1-1	
	축령산야영수련장	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133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【별표 2】의 분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